

NSL1.38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보안법대토론회자료집

1991. 5. 3.

1991. 5.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가보안법대토론회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 I. 민주주의와 사상 및 표현의 자유 / 강경선(방송통신대 교수) ·
- II.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 박원순(변호사) ·
- III. 국가보안법의 개폐방향 / 최병모(변호사) ·
- IV. 종합토론 / 사회 : 김창국(변호사) ·

토론 : 박상천(신민당) 장석화(민주당)

이석원(민중당) 이석태(변호사)

강경선(방송통신대교수)

- V. 부록 :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개폐의견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일 시 : 1991년 5월 3일(금) 오후 4시

장 소 :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민주주의의 실현

강 경 선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87년 6월항쟁과 6공화국 시작이후) 무성히 있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폐지론의 근거를 몇갈래로 요약한다면 첫째,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국보법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둘째,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당초의 입법목적이 퇴색했다는 견해(국보법은 냉전체제의 산물인데, 유신이래 정부가 취해온 평화통일정책이나 최근의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정책, 그와 함께 6공화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을 고려해 볼 때 국보법의 존치는 더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 셋째, 국가보안법의 적용상 권력남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무원칙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수많은 간첩조작사건, 좌익 내지 공산계열을 이유로 한 불법연행, 불법구금, 고문, 불법행형이라든가 최근의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한 공권력자와 일반국민들 사이에 대북한통행과 관련한 차등처우의 예를 들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넷째, 국가보안법은 종국적으로 자본-임노동이란 기본적 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자본가를 보위하기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어차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 세 주장이 법과 관련된 규범학적인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지막 주장은 사회과학적인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이 법규범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인 측면 양쪽의 논의로부터 현행국가보안법이 갖는 문제점들은 거개가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무성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껏해야 여당이 위세를 부리면서 부분개정안을 동냥폰삼아 내어놓고, 야당은 그거라도 아쉬운 김에 받아 두어야 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현재

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무위로 그치게 되었는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법의 실체적(material) 모습부터 다시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자. 법은 그 구성요소로서 의지(voluntas; will)와 이성(ratio; reason)의 두 측면을 갖는다. 의지와 이성을 확연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종합된 모습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의지와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의지는 토대의 성격을 띠고 이성은 상층부 꼭지점을 이루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그 저력은 대단히 약할 수 밖에 없다.

의지는 인간이 가진 욕망구조 그 자체이다. 그 욕망구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를 반영하는 외적 표현물로서의 이성은 변화한다. 의지가 요구하는 바대로 이성은 그에 부응해서 논리조작을 하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 이성은 의지를 통제하는 기능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지자체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이성은 부유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법철학적 생각을 국가보안법에 적용시켜볼 때, 국가보안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그동안의 논의가 결국은 국가보안법의 이성적 측면을 위주로 한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정당하게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성적 논의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단계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 측면에까지 그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노력이 국가보안법 전체를 파악(Begriff; 개념)하지는 못하는 것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국 사람들의 구체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힘에 의한 운동이 개제되지 않을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은 '논의'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담고 있는 의지적 측면을 들여다보자. 의지의 측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석불가능한 다채로운 정서와 감정의 전체로서의 욕망구조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성과 반이성을 넘어서는 '비'이성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 자체로 보아서는 가치평가의 전단계에 있는 즉자적 존재이기도 하다. 욕망구조의 궁극은 생명의 욕구라 할 수 있는데 생명욕은 사회속에서 '소유욕'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욕망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명과 재산'을 열거하는 것은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즉자적 존재로서의 '생명과 재산'을 회귀하는 욕망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형태이기도 하다.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전개된 서구의 시민혁명은 그 전취물로서 한결같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신성불가침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그를 골자로 한 헌법을 갖추고 그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근대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동의를 보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설사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이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규정을 집어넣은 헌법

의 선언에 동의를 하지 않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그것이 법으로 나타날때 즉자적 욕망구조와 대립하는 대자적인 이성적 요구를 함으로써 완결된 외형을 갖춘다. 헌법의 요구는 개별적 욕망구조를 즉자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단계에 까지 승화 조정되기를 이성적으로 명령한다.

이렇기에 즉자적인 욕망구조로서의 의지와 대자적인 명령으로서의 이성이 대립 충돌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의지가 이성을 압도하여 그 자체가 헌법을 대신할 때 흔히 국가이성(raison d'etat)이 헌법이성에 앞서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국가이성이 확연하게 전면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국가를 군국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반헌법적 독재국가로 불러 비판하지만, 오늘날까지 어떤 나라도 헌법이성이 지배하는 국가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대개 입헌국가라 알고 있는 서구 법치국가는 대내적으로는 소수자문제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권력행사를 통하여 입헌국가성을 명확히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상황은 어떠한가? 시민혁명을 통한 헌법쟁취형태가 아닌 서구헌법의 수용과 이식의 형태로서 시작된 헌정시기에 더군다나 체제와 원칙, 그리고 순서없이 진행된 법치국가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되는 계기부터 최소한의 우리 국민의 즉자적 욕망구조조차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하다. 미국의 국가이성이 확장되는 연장선 위에서 강제이식되었기에 헌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민의 즉자적 욕망구조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정이 출범하는 비운을 맞았다. 예상되는 바로는 얼른 자신의 욕망구조와 부합된 세력은 친일파를 위시한 매관세력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국헌법에 대한 입장정리도 되지 않은 채 새로운 헌법국가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형법에 앞서서 국가보안법이 먼저 제정된 것은 바로 이런 각도에서 이해되는 사건이었다. 본래 자발성을 본질로 하는 국민의 욕망구조 자체를 타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통제근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런, 따라서 비논리적인 헌정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6.25를 통해서 한층 강화된다. '생명과 재산'이 절멸될 수 있다는 공포로서의 극한적 체험은 '안전'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를 보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쟁의 상흔은 점차 치유되었지만 깊고 깊은 곳에 자리잡은 생명과 재산의 박탈에 대한 공포의식은 잠재의식으로서 위기상황만 나타나면 불현듯 현재화해버리곤 하는 것이다.

빨갱이, 공산당, 마르크스, 노동, 계급과 같은 계열의 용어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내란과 전쟁 그리고 생명과 재산의 절멸을 연상시키며, 그런 개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많은 부분 이성적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지기도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정권을 쥔 측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안전제일주의' 사고를 부채질하고, 이를 자신들의 반헌법적 정권운영에 이용하였다. 가장 강력한 정권도전자의 세력들은 공산주의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처형 내지 투옥되었다. 그때마다 사용된 법이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다. 이렇듯 상당한 부분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안전제일주의' 사고에 심리적 보상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허황하고 병적인 '안전심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런 안전에의 병적인 욕구가 확실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쟁이 없으리라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든가, 아니면 병적인 상태자체를 극복하든가 해야만 하는데, 그 첫번째 요구 즉 앞으로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국민들에게 제시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40여년 동안 남북간의 크고 작은 무력 도발사건들은 구체적으로 계속되어왔고, 국제적 역학관계도 공지의 사실이된 이 즈음에 한반도에 그런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얼마든지 상존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없기 때문이다. 다만 70년대부터 일각에서부터 시작된 남북회담의 시작과 최근의 북방정책과 같은 것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병적인 공포심을 해소시켜 주는데 많은 기여가 되었겠지만, 세계적 해빙무드 속에서도 이라크의 참혹한 패배와 같은 미국의 위용은 여지없이 국민들의 평화에의 안도감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있다. 그리고 예컨대 최근의 국방부장관의 대북공격가능성 운운 발언은 비록 장관으로서 실언의 비판을 받은바 되었었지만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욕구의 치유과정에 대해서는 병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주기에 충분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진전을 하지 못하는 의지적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포기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성을 가로막는 반이성적, 반민주적, 따라서 야만사회의 법인 까닭이다. 국가보안법이 형식에 있어서 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밝혀내어 그것을 점차 개정하고 적용을 좀더 올바르게 하는 작업도 물론 해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개정을 넘어서 폐지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우리는 보다 높고 험한 산을 넘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말하였듯이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내재하고 있는 병적인 '안전제일주의' 사고를 치유를 함에 있어서 첫번째 방법인 전쟁중식을 확고히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접근하는 많은 정책들을 국가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를 위해 남북한 군축과 같은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와 함께 민간인들이 통일의 대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어차피 현재의 정권하에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나라 정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의 민주화운동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이 현실의 아이러니인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대치시켜 설명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다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법이 그 법 자체의 개폐논의를 금지하는 것은 법형식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법치주의의 종말을 뜻한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지난 72년 유신헌법 하에서 긴급조치를 통하여 헌법에 대한 논의자체를 금지하는 극악의 상태를 경험한 바 있고, 그때는 명문의 근거로 불법을 자행했던 반면, 지금은 법의 운영과정에서 권력기관들이 그렇게 사실상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상황은 국가보안법 폐지논의 자체는 전에 비하여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그 논의를 출판, 집회, 운동으로 조금 확장하고자 할 때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의 대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공권력은 우리나라의 일반행정권과 사법권, 경찰과 군대, 그리고 비공식적 권력까지 총동원되기 때문에, 그 난관의 극복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다가온다. 동시에 국가공권력과의 대결구조는 대개의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의 부당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동시에 공권력에 맞서는 사람의 요구와 행동이 보다 정당할 때만이 기약된다. 비록 국민들이 병적인 안전제일주의 의식이나, 비이성적,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국가권력에 조건없이 인주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기에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안된다. 우리가 할 일이란 모름지기 속속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공개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여 잘못된 공권력을 제자리로 돌아 가도록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제6공화국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박 원 순

1. 서 론

제6공화국은 5공화국의 시신을 덮고선 정권이다. 비록 '6·29'라는 국예를 통해 헌정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저항권에 의해 분명 5공화국의 악정을 단절하도록 요구 받고 있었다. 이른바 '5공청산'의 시대적 요구가 6공화국의 어깨위에 지워진 가장 무겁고 절박한 짐이었다. 그 가운데 5공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인권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이야말로 '5공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인권의 개선을 이루는데에는 5공의 악정을 가능케 하였던 악법의 개폐, 그 악법하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석방과 보상, 인권억압기구의 철폐, 그리고 인권의 유린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수사기관, 재판기구의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구속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내 '민주발전법률개폐 특별위원회' 구성등 위와 같은 인권개선의 시늉을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6공화국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사요원과 재판담당자들은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이와같은 6공화국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악법의 상징으로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 초기에는 개폐의 논란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이른바 공안정국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5공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심수의 구속근거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5공화국의 낙네임은 6공화국으로 당연히 넘겨주어야 마땅하게 되었다.

2. 제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

제6공화국 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1988년 125명, 1989년 215명, 그리고 1990년 10월말 현재 274명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1)

국가보안법 입건자의 숫자를 보더라도 1984년 60명, 1985년 156명, 1986년 420명, 1987년 583명으로 한껏 증폭하였던 것이 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 209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1989년 한해에 485명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2)

1988년 2월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1988년 한해에 125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생겨난 한편으로 여론의 압력에 의해 5공시절 구속되었던 양심수를 선별적으로 석방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늦추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에는 일반적으로는 노동운동 및 민생인권 관련자가 많이 구속되었으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6·10', '8·15' 남북학생회담을 비롯한 통일운동, 북한바로알기운동 등과 관련한 출판운동관련자의 구속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3)

1989년에 들어서서 전해의 배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늘게 되는 이유는 문익환목사의 방북 이후 벌어진 이른바 '공안정국' 때문이다.

"정부는 문익환목사 방북사건을 '재야단체의 조직적인 체제도전행위'로 간주, 강경대응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일 전민련 서총련등 재야단체의 국가보안법등 실정법위반혐의에

지역별	죄명별		신병관계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구속	불구속
본부				
서울	68	79	92	55
인천		45	34	11
수원	1	53	35	19
춘천		17	17	
대전		5	3	2
청주	12	4	11	5
대구	1	24	19	6
부산		42	26	16
마산		28	36	2
광주		41	26	5
진주	3	8	6	5
제주		2	2	
합계	85	318	307	126

대한 사실상의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4)

이와같이 시작된 '공안정국'하에서 공안합수부가 탄생하여 활동한 77일동안 국가보안법으로 무려 85명이 구속되었다. 이 기간중에 과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사건이 재수사되고, '6·29'가 있기까지 민주화를 주도해왔던 재야단체들이 전면적 수사대상이 되었다. 이 기간 중의 공안합동수사본부 사건처리 현황을 보자. 5)

그러나 '공안합수부'의 해체 이후에도 검찰이 "학원·노동·재야등 각분야 좌익세력에 대한 계속적 수사, 좌경이념 출판물·유인물 단속강화, 평양 학생축전참가기도 사건수사, 화염병 엄단등 좌익폭력세력적결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 6) 이라고 밝힌 대로 '공안정국'은 상설화되었다.

이와같은 '공안정국'의 상설화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해 선도되고 또한 뒷받침되었다. 6공정권은 5공청산과 민주화, 생존권과 통일을 외치는 학생과 시민, 재야인사들을 '좌경 폭력혁명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안간힘을 다했다. 이들에게 토해낸 적대와 저주의 말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폭력혁명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법치질서를 이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민주주의의 앞날은 물론 나라의 운명도 달려있다……. 지난 1년여동안 체제전복 세력의 선동으로 안정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자제와 인내로 대처해 왔으나 이제 자제하는 단계는 분명히 지났다." 7)

이리하여 '폭력혁명세력'에 가장 먼저 국가보안법의 딱지가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 6. 27. 「국내좌경실상자료집」을 통하여 좌경세력이 침투한 조직은 전국 12개(학원 2, 노동 1, 출판문화교육 4, 재야및 종교 5), 지역 114개(학원 20, 노동 30, 출판문화교육 25, 재야및 종교 39)인데 핵심세력수는 학원 6천5백명, 노동 2천2백명, 출판문화교육 1천명, 재야 및 종교계 8백명등 1만5백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8) 이 단체들의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987년에서 1988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없던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적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여·야모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1990.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많은 정치인·언론인·재벌인사들이 남북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선 학생, 재야인사들은 방북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히 이념서적 하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가는 기이한 현상이 6공화국 내내 벌어지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규정한 6공화국의 북방정책기조자체가 '반국가단체'를 중심골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양립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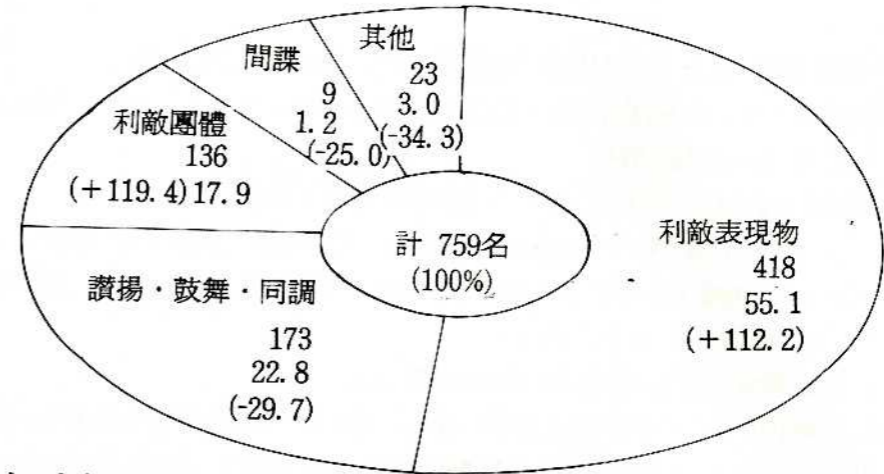
모순 속에 있는 것이다.

3. 제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첫째, 제6공화국하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도표9)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위반의 양심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계속 늘 뿐만 아니라 양심수에서 차지하는 국가보안법 적용구속자 비율 역시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도표는 1990. 11 현재의 것이며 비교시점은 1990년 6월이다.

구속법규	국보법	집시	화염병	공무집행	폭력	노동관계	그외	미확인
수 치	513	212	240	87	200	170	14	78
비 율	40%	16%	19%	7%	15%	13%		6%
6월과 비 교	398 32%	172 14%	252 20%	62 4%	188 15%	392 31%		118 9%

둘째, 국가보안법이 무차별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으나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노동자의 경우 1990. 11월 현재 437명의 구속자 가운데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01명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10) 이 비율은 전체양심수 가운데 국가보안법구속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치는 못하지만 노동운동의 일상적인 농성, 정의행위등과 관계없이 이적단체구성 또는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노동운동탄압의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다. 출판인 역시 1988년 10명, 1989년 43명, 1990년 41명 합계 9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제5공화국 7년동안 33명이 구속된 것에 비추어 볼 때 3배나 구속된 셈이다. 11) 화가만 해도 6공화국 하에서 18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은 6공화국의 국가보안법을 통한 예술의 자유 유린상황을 한눈에 알게 한다. 12) 셋째, 국가보안법의 적용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과 찬양·교무·동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13) 아래 도표에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가 112%나 증가되고 또한 이적단체구성이 119%나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리태도와 관행은 거의 달라진 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는 여러가지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안기부의 수사주도권은 계속 유지되었다. 사법부의 국가보안법사건에 관한 구속영장기각율과 무죄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1989. 1. 1. 부터 90. 3. 31. 까지 총 881명의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영장발부 신청에 대하여 8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기각율은 겨우 1.9%에 머물렀으며 같은 기간 449명의 국가보안법위반자에 대하여 무죄선고는 단 2명에 그침으로써 무죄율은 0.4%에 그쳤다. 14) 한편 위의 같은 기간동안 449명의 국가보안법위반자에 대한 선고 가운데서 167명에게 실형선고를 함으로써 37.2%의 실형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범죄보다 여전히 높으나 종전보다는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 입증하여 주고 있다. 15)

■ 주)

- 1) 1990. 11. 30. 자 조선일보, 국가보안법 적용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인권침해의 비난 우려때문에 치안본부는 다른죄와 국가보안법의 경합범들을 제외한 채 1990년 10월말까지의 10개월간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166명이라고 국회에 허위보고 하였다가 말썽이 나기도 하였다.
- 2) 대검찰청, 1990년도 검찰연감(1990. 10. 7. 자 조선일보)
- 3) 손광운, 「양심수 석방의 제문제」, 인권보고서 제3집, 대한변호사협회, 1989. 3.
- 4) 1989. 4. 3. 자 동아일보 기사
- 5) 1989년도 내무부 국정감사자료(평화민주당인권위원회, 1988-1989 인권백서, 1990에서 재인용)
- 6) 1989. 6. 18 자 한겨레신문 기사
- 7) 1989. 5. 9. 자 청와대 임시각의에서의 노 대통령의 지시(1989. 5. 10. 자 조선일보)
- 8) 1989. 6. 28 자 동아일보 기사

- 9) 1990년 11월 10일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90년 양심수현황」
- 10) 장명국원장과 구속노동자석방을 위한 준비모임,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공청회자료집」 21쪽
- 11) 1990. 7. 17. 자 한겨레신문 기사
- 1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991. 4. 25.
- 13) 1990. 11. 30. 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대검제출자료. 이 자료는 1989. 9. 부터 1990. 8. 까지 1년간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범죄유형별로 나누고 그 1년전인 1988. 9. 부터 1989. 8. 까지의 숫자와 비교하여 증감을 표시한 것이다.
- 14) 1990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제출 자료
- 15) 예컨대, 출판인의 경우 구속된 9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이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나머지 84명으로서 94%의 집행유예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위력 하락과 함께 사법부의 소신없는 판결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방향

최병모

1. 머리말

제6공화국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반민주악법은 제5공화국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요구와 민주화라는 6공화국 당면 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시급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합의를 보아 국회내에 반민주법을 개폐특위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87년의 민주항쟁을 거쳐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야당과 재야정치세력 및 국민들이 요구한 바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1990. 3. 14. 국가보안법의 소폭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채 그동안 전혀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하여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위 안에 따라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종래의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입법을 할 것을 주장하면서 1989. 12. 4. 자로 국회에 가칭 '민주질서보호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평민당의 대체입법안 역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종래의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사상과 정치적 자유의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민당은 종래의 대체입법안마저 포기하고 민자당의 개정안에 동조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1)

여기에 과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옳은 것인지, 또는 이를 존치하면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체입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운용실태

(1)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첫째로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 12. 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종래의 반공법을 흡수하여 대폭개정된 것으로 그 제정의 주체와 절차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은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법률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법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얼마든지 유추, 확장 해석될 여지를 그 자체로서 안고 있다.

반국가단체(제2조 제1항)의 개념요소인 '정부침략'이나 '국가변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전 선동',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허위사실 날조'(제4조 1항 6호, 7조 제4항), '찬양, 고무, 동조 및 기타의 방법',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제7조 1항, 2항, 5항)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8조)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를 포괄하는 것인지 등 그 어느것도 의미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들이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간첩죄 등과 중복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법규정 자체를 인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에 달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형법 이외에 별도의 특별법이 불필요한 것이다.

제3조 제1항(반국가단체구성), 제4조(목적수행) 등이 그것이다. 2)

넷째로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의 전부가 그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침해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순수한 형식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가입(제3조), 자진지원, 금품수수(제5조 2항), 잠입, 탈출(제6조 1항), 찬양, 고무(제7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등 모든 국가보안법 규정이 그 행위로 인한 어떠한 결과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행위마저도 법집행자의 자의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위 학생이 미군철수,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적은 유인물을 작성한 행위 또는 이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되어 온 무수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2) 운용의 실태

유신 치하의 국가보안법 운용실태는 이를 접어 두더라도 제5공화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 하는 점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직접

처벌을 당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변론해 온 변호인들로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제5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건의 거의 전부는 국내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과 노동운동, 전교조활동, 빈민운동에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들 및 소위 이념서적을 저술·출판한 작가·출판인 등이며, 6공화국에 들어서는 이에 다시 통일운동가,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화가, 평론가 등이 추가되었다. 인노투사건, 문익환 목사사건, 서경원의원사건, 임수형씨사건, 홍성담씨사건, 서민련사건, 민자통사건, 자민통사건, 범민련사건, 삼민동맹사건, 서미련사건 등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성격 자체에서 유래할 뿐 아니라 제5공화국정권 및 현정권의 부도덕성과 반민주적성격, 반통일적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의 해석, 적용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명백한 사건 조작의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첫째로,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전반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고 처벌규정에서 구성요건요소, 특히 처벌대상인 행위요소를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 집행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백지형법의 형태를 취한 결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이 곧 구성요건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은 또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그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왔다.

그리하여 평소에는 일반 서점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책자를 특정인이 소지한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지목되어 구속기소되고, 정부의 승인을 얻은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묵인되면서 다른 언론인이 북한 취재계획을 세운 것만으로 처벌되는 등의 사례를 수없이 만들었다. 화가 신학철씨의 경우 그가 그린 그림 '모내기'에 그려진 초가집을 수사기관이 김일성생가인 만경대로 해석하고,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해석하여 구속기소하였다. 범민련사건과 김현장·고현주부부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거없이 유럽 민협과 일본의 민단체열 단체인 한통련을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로 지목한 것만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이것은 마치도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의 영역을 침해하여 처벌규정에 "정부당국의 승인없이" 또는 "정부당국의 판단기준에 위배하여" 등의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처사로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자체가 정치적 탄압임을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의율하여 구속기소함에 있어 최후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집착하는 부분은 어휘의 유사성 내지는 동일성이다. 그 의율의 빈도가 가장 높은 이적행위(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제작, 소지죄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검찰의 공소장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연방제 주장, 남한을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라고 보는 북한의 견해에 유사한 정치경제학상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평화 협정체결과 불가침선언을 주장하는 것 역시 북한이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논지이다. 실로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이 그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자기방어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어떠한 인물을 그 구성원으로 지목하며, 어떠한 행위를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고 간주하고, 어떠한 표현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으로 기술하면 즉시 그 사람의 그 행위는 그때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의율되어 구속기소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되었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은 다만 법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적단체나 조직을 수사기관이 고문과 회유, 협박에 의하여 조작, 날조하고 이에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짜 맞추어 기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는 반민주적인 행정권의 비호아래 공안세력이 자기방어적인 목적에서 공안사건을 재생산하는 특성이 국가보안법의 불명확성 및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법적 성격과 결합된 결과이다.

넷째로, 이러한 무차별적인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무절제한 자의적 법적용을 사법부가 그대로 용인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실로 5공화국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중 무죄전수는 전무하다시피 회소하였다.

5공화국 이후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일반 국민과 재야 정치세력 및 민주운동가들이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민주자유당의 개정안과 그에 대한 비판

(1) 개정안의 구체적 검토

민자당은 1990. 3. 14. 이진우의원 등 217인의 발의로 국회에 '국가보안법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0호)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이유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에 따라 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 검토해 보면 민자당의 개정안은 이제까지 학계와 법조계, 야당과 재야 정치권, 일반 국민들이 지적해 온 그 위헌성과 반민주성은 전혀 개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개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1)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확대해석의 금지등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의 '반국가단체' 개념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은 안기부나 치안본부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본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며, 본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사람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은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국내에 있어서의 정부의 입장과 사상적 경향이 다른 단체를 종래 모두 제7조 3항의 이적단체구성죄로 처벌하여 왔고, 실제 국내에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결사 또는 집단이 있을 경우 관련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니 위 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래 적용의 실례를 찾을 수 없었던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목적요건의 추가

민자당의 개정안은 금품수수(제5조 제2항), 잠입, 탈출(제6조 제1항), 찬양, 고무, 동조(제7조 제1항), 회합통신(제8조 제1항)등을 수정하여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첫째로, 무엇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결과 이것은 여전히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위반자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북한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법집행기관의 견해가 목적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갑자기 전환되기를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둘째로, 목적법에 있어서의 목적요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인 것이므로 그 목적요건의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제적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목적요건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의 존재는 객관적 행위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미군철수를 주장하면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법집행기관이 여기에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정해 줄 것인가의 여부는 묻지 않아도 명백한 일이다. 더구나 현행 국가보안법중 목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적용빈도가 가장 높아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및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에 관하여 현재의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 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0.8.28 선고 90도 1217판결)라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있음을 보면 목적요건의 추가로 현행 국가보안법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폐해가 불식되리라는 기대는 가질 수 없다. 위 판결은 단순히 민주, 자주, 평화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소규모 통일운동단체를 결성한 것에 지나지 않은 민자통사건에 관한 판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실제 현행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를 보더라도 목적요건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이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주권국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외국군인 미군의 철수와 작전지휘권의 반환 및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이 북한 역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해석론상의 이론적 귀결과 현재 이를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대비해 보면 이적목적의 추가여부에 따라 그 해석론이 달라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3) 또 제10조의 불고지죄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다소 축소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결국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제9조(편의제공)에 불과하다. 그러나 불고지죄 자체가 이미 그 적용의 경우가 매우 희소할 뿐 아니라, 공산권국가는 물론 북한과의 교류와 교역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벌써 가벌성

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4) 그 밖에 국외공산계열과 관련한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안 제6조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의 삭제), 도대체 내국인으로서 국외 공산계열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경우란 간첩죄에 부수된 경우나 현재 정부의 승인아래 허용되고 있는 관광목적이나 경제적 교역의 경우가 아니면 이전에도 없었고 장래에도 생각하기 어려워 이 부분 개정안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5) 안 제4조(목적수행) 제2호에서 국가기밀의 범위를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밖의 것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그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국가의 안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중대한 불이익'이란 무엇인지, '한정된 사람'이란 어떠한 범위의 사람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어떠한 지식은 국민중 어떤 부류의 한정된 사람만이 알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법 집행자의 자의적 기준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또한, 개정안은 반국가 단체가입권유, 찬양, 고무, 동조, 허위사실날조, 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 통신, 편의제공 등에 대한 예비, 음모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안 제3조 제5항, 제7조 제7항, 제9조 제5항).

그러나 본래 예비, 음모죄는 그 본질에 있어 범죄행위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준비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준비행위에 범죄로서의 정형성이 있고, 내란, 살인, 강도 등 그 행위에 나아갈 경우에는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피할 수 없는 중범의 경우에 한정하여 특별규정을 둔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반국가단체 가입권유, 찬양, 고무, 동조,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행위는 그 자체 순수한 형식법의 형태로서 그에 앞선 예비음모행위란 이론상으로는 몰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처벌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7) 그 밖에는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규정을 임의적 병과규정으로 고치는 것(안 제14조) 외에는 단순한 자구수정 정도에 불과하다.

8) 개악부분 : 구속기간의 연장

개정안 제19조 제1항은 중례의 구속기간에 대한 특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은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 및 제4조(목적수행)의 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1차에 한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2항에도 단서를 신설하여 검찰에서도 다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경찰 및 안기부가 입건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최장기 70일간을, 검찰이 입건한 그것의 경우에는 최장기 40일간을 수사기관의 구속상태에 방치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유례없는 수사기관의 장기구금으로서 이미 종래부터 문제되어 온 수사기관의 고문, 점권방해, 강압적인 수사와 사전조작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의 청구가 있으면 거의 전부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은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2) 결론

이상 본 바와 같이 민자당의 개정안은 결국 이적목적 추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그 부분으로 인하여 현재의 국가보안법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폐해가 제거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 밖의 부분은 법이 상정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거나 정부당국의 차별적 법적용에 의하여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적으로는 적용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부분의 개정이 아니면 자구수정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민자당은 구속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개악안을 포함시키고 있으니, 이점은 오히려 현재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를 증폭시킬 것이다.

4. 신민주연합당의 대체입법안(민주질서보호법안)

(1) 제안이유 비판

평민당(현재의 신민당)은 1989. 12. 4. 의안번호 754호로 박상천의원 등 70인의 발의로 '민주질서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근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민당은 위 법안의 제안을 포기하고 민자당의 개정안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추가수정을 요구하는 선에

서 합의를 볼 것이 거의 명백하여 위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다만 보수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을 알아보는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본다.

신민당은 위 법안의 제안이유로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형법과 다른 형사특별법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허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보완장치없이 폐지되면 직접적으로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형법의 간첩죄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북한이나 '적국 또는 적대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

그러나 우선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이란 결국 국가체제 변혁을 위한 이론의 선전이라는 것이 되는데 국가체제란 단고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국가체제의 개혁 변혁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상과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으로 그것은 처벌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처벌되어서도 안되는 부분이다.

나아가 '적국 또는 적대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간첩이란 그 개념 자체가 적국을 위한 첩보수집행위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 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제사회에 있어 모든 외국은 적국이 아니면 우방인 것이고, 우방을 위한 간첩이란 상정할 수 없다. 군사상의 기밀 외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 국민은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형법 제127조가 따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형법상 간첩죄가 되는 경우 이외에는 더 나아가 처벌할 필요가 없고 정치적 악용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상정할 수 없다. 또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간첩죄에 있어서의 적국으로 보고 있으므로 북한을 의식하여 위 조항을 둔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2) 구체적 검토

1) 안 제1조는 입법목적과 엄격해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민자당의 개정안 1조와 대동소이하다.

2) 정의규정인 안 제2조는 '국가의 안전'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의 안전’은 그 개념의 추상성과 다의성 때문에 정의규정에 의해서도 정확히 규정되지 않는 부분이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체제에 관한 모든 기본원칙을 포괄하고 있어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제도의 변혁이나 개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그 자체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거나 선전하는 경우란 통상 찾아 볼 수 없어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규정은 별 의미가 없다.

안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한다’함은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과 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제도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동조 6항의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는 민자당 개정안의 제4조 2항 1호 가목과 동일하며, 그 비판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될 것이다.

3) 안 제3조(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죄) :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 중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며 별도의 규정은 필요치 않다. 이 부분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하여 민자당의 개정안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 중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정의만을 따로 분리하여 안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안 제4조(민주질서위해의 죄) :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이 무엇인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가 처벌되는 허위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정부당국이 판단하면 처벌되는 것인지,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는 것이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남용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즉 위 조항들은 그 개념의 정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의 포괄성과 규제기준의 다의성, 규제목적의 불명료성 때문에 그 자체 백지형법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하고 있으며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미군은

더 이상 주둔의 필요가 없고, 따라서 미군철수와 남북 불가침선언, 평화협정체결이 즉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현재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 신민당의 법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국가의 안전 침해, 허위의 사실, 적대국의 적대적 활동 등의 개념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확장할 수 없는 개념들이며, 그 기준에 대한 합치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결성 및 그 가입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조문체제상으로는 문언상으로 현재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대법원은 이미 현행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는 바(대법원 90. 9. 11. 선고, 90도 1333판결), 민주적기본질서의 폐기, 침해라는 요건이 별다른 제약요소가 될 수 없음은 벌써 분명하다.

제5항은 학문, 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記述)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문, 예술, 역사의 연구나 기술이란 결국 그 연구 및 기술결과를 발표, 선전, 전파하여 동조자를 획득, 확장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현실을 개혁,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발표, 선전, 전파를 배제한 학문, 예술 등의 연구란 그 자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학문, 예술, 역사의 연구와 그 발표, 전파, 선전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발표와 전파 및 이에 대한 비판과 동조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학문, 예술의 연구와 발전이 가능한 것인데, 이 법안에 의하면 위 조항에 불구하고 발표단계에서부터는 처벌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5) 안 제5조(적대국가등의 지령을 받은 자의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이규정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의 규정중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과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제1호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6) 안 제6조(적대국가등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이 부분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 제1조(자진지원)와 동일하고 다만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7) 그 밖에는 무고, 위증, 자격정지의 병과, 몰수, 추정, 형의 감면, 공소보류 등의 규정 이 있는 바, 이 역시 현행 국가보안법의 그 부분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결국 신민당의 법안을 현행 국가보안법과 비교할 때 폐지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 제6조의 잠입, 탈출, 제8조의 회합, 통신, 제9조의 편의제공, 제10조의 불고지, 제19조의 구속기간에 대한 특례조항 정도가 그 중요한 것이다. 이 한도에서는 신민당의 새로운 법안은 국가보안법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래부터 단순한 금품수수는 처벌가치가 없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실제 경제 교역행위를 제외하고는 간첩행위 등에 부수된 것이 아니면 단순한 금품수수는 발생하는 예가 드물고 처벌가치도 없는 것이다. 나머지 조항들도 그것이 독립적으로는 거의 발생하는 사례가 없거나 또는 처벌가치가 없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등으로 비판되어 왔던 조항들이다.

이렇게 보면 국가보안법중 가장 적용사태가 많아 그 폐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개념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법적용으로 비난의 초점이 되어왔던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이적단체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되는 신민당의 법안 제4조에 그 형태를 바꾸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셈이다. 그 밖에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등은 모두 신민당 안에 거의 원형대로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대체입법이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5.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신민당의 대체입법안을 살펴보았으나 어느것도 현행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근본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첫째로,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민자당의 개정안 및 신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 모두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행위'가 아니라 '국가체제 또는 집권세력에 대한 막연한 위협성 내지 반대의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결과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위 3개의 법률 또는 법안은 결국 '특정한 사상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점이 없다. 무릇 국가 또는 사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체제는 그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과 안정을 위하여 존재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자각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형사법 역시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과 안전의 보호장치인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나 사회에 대한 막연한 위협성이나 우려를 내세워 개인을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로,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행위의 정형성을 결하고 있어 그 해석, 적용에 있어 국가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이제까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부분들이다.

셋째로, 지난 오랜 세월동안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에 길들여진 국가안전기획부 및 대공수사기관 등 공안세력이 그대로 존재하는 현실에 있어 법의 지역적인 수정으로 사건의 조작마저도 서슴지 않는 공안수사기관의 관행화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제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전부터 국가안전기획부 폐지론이 강력히 대두되었고, 이를 의식한 정부는 이미 1988년 12월에 국가안전기획부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민자당 또한 1990년 3월 14일 의원입법안으로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의안 831호), 1988년 7월 18일에는 당시의 야당 단일안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대의정보처법'으로 대폭 개정하는 안(의안 64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안 및 민자당안은 종래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문적 수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야당 단일안은 수사권과 기획조정권을 폐지하는 등의 점에서 훨씬 성실하고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어 국가안전기획부의 횡포를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창설과정과 그 이후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국가안전기획부는 마땅히 폐지하고 대외정보의 수집, 작성만을 별도의 축소된 기구로 하여금 담당케 하며, 그 기구의 구성, 조직, 업무, 예산 등은 철저히 국회의 감시하에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넷째로, 이와 같은 미온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국제적인 화해기류를 타고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공산권과 교류를 촉진하는 일방, 북한과의 교류 역시 확대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되어 갈수록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정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중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폐기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 그 밖에 이적행위,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제7조)는 그

자체 사상,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인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부분은 이미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진 부분으로 이를 폐지하고 그 규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보완장치 없이 전면 폐지한다면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인가?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상의 추구하고 표현 자체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리에 합치하는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질서 침해행위에 나아간 때에는 그에 대응하는 개개의 법규정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 이상의 예방적 제재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상의 표현이 허용되는 것만으로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냉전시대의 국가안보 우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또한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저의를 호도하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현행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 주)

- 1) 종래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고, 현재에도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2) 자세한 내용은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역사비평사 1989년) 17면 이하 참조
- 3) 자세한 것은 전제 '반민주악법개폐에 관한 의견서' 45면 이하

부록

국가보안법의 부분별 적용사례와 그 개폐의견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국빈민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및 그 개폐방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지난 4월 19일 임시국회가 개최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의 악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빈약하다. 우리는 민자당의 반국민적 행위를 규탄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래 참고자료에서도 드러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경부터는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협노맹, 사노맹, 자민통, 민노투맹, 범민련, 조통그룹, 경수노련, 애국군인, 서울민미련 사건' 등이 줄줄이 터지며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용공집단', '좌익폭력'으로 조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잔인한 고문수사가 행해지고 있다.

□참고자료(구속자 현황조사)

1) 현재 구속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1119명으로 '학생 591명, 노동자 223명(전노협 소속 노동자 166명, 노동운동가 57명), 청년재야 60명, 출판인 30명, 문화예술인 14명, 군인·전경 47명, 농어민 10명, 노점상·철거민 8명, 교사 2명, 의사 2명, 종교인 5명, 장기복역양심수 127명' 이다.

2) 이들을 구속법규별로 구분하면 국가보안법 539명(48%), 집시법 160명(14%), 화염병 195명(17%), 폭력 118명(11%), 공무집행방해 54명(5%), 정의조정법 44명(4%), 업무 방해 76명(7%) 등이다(경합으로 100%초과).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1990년 6월 16일=398명(장기수 포함 전체의 32%), 1990년 10월 말=513명(전체의 40%),

1991년 3월 30일 현재=593명(전체의 48%)으로 꾸준히 늘어나 이제 구속자의 거의 절반이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보고 있다. 또 같은 시기 장기수들의 수를 제외하고 시국관련사범들만 살펴보면 1990년 6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247명이었는데, 90년 10월말에는 366명, 지금 현재는 412명으로 1990년 6월과 비교해서 무려 67%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국회에서 계속 제류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3)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작년 10월(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시작된 대국민 공안통치의 시작) 이후로 무더기 조직사건의 발생에 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경우(장기수를 제외하고), 사노맹사건 68명, 자민통사건 23명, 협노맹사건 33명, 전민련학력사건 28명, 반미구국전선사건 8명, 서울민미련사건 11명, 조통그룹사건 6명, 민노투맹사건 8명, 범민련사건 7명, 부산 애국군인사건 7명, 고려대 우금치학습탐사건 6명, 경수노련사건 6명으로(모두 211명) 시국관련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51%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한 원인이 바로 작년 10월 이후로 조직사건이 무더기로 양산되면서 대량구속 사태가 발생한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 근래의 사노맹사건, 전민련사건, 자민통사건 등이 국가보안법 상의 3조 1항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으로 기소되고 있어 검찰의 법 적용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4) 1991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무려 87명이다. 88년 100명, 89년 252명, 90년 412명으로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3년여 기간'에 총 851명이 또 감옥으로 갓어야 했다.

5) 민가협에서 파악한 1989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가보안관련 구속지는 다음과 같다.

1989년 적용사례

성명	부분	직업	사건명	적용법조	선고
강인석	학	경남대	경가남부	국가보안법, 집시, 폭력	5년
김성광	학	안양민주노동자일동	인제애국청년회	국가보안법7조3	2년
김성영	학	인제대	인천노동자그룹	국가보안법	5년
김영민	학	한양대		국가보안법7조3	1년6월
김장권	학	외국어대용인		국가보안법	1년6월
김재석	학	강원대		국가보안법	1년6월
김진희	학	강원대		국가보안법	1년6월
김현장	노	인민노련	인천	국가보안법7조3	2년
김현직	노	안양민주노동자일동	경가남부	국가보안법7조3	1년6월
노병직	노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국가보안법5조1항	7년
노찬운	노	인민노련	인천	국가보안법7조3	2년6월
노현필	학	인민노련	인천	국가보안법7조3	2년6월
문규길	학	청주대	혁노맹사건	국가보안법	5년
박대승	학	신부	평양방문	국가보안법	2년6월
박대승	학	호남대	양심선언	국가보안법	5년
박대승	학	35사단이병		국가보안법	1년6월
박대승	학	영남대	목포참사청년회관련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31사단방위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국가보안법	7년
박대승	학	성균관대	서외원관련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의원보좌관	이철규진상규명투쟁	국가보안법7조1, 5	2년
박대승	학	전민련공동위원장	평양방문	국가보안법4조	10년
박대승	학	국회의원	민불련활동관련	국가보안법7조3	3년
박대승	학	민불련의장	마산, 창원	국가보안법, 폭력	3년
박대승	학	효성중공업	평측관련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이주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국가보안법	3년
박대승	학	성균관대	황토현학습관련	국가보안법	3년
박대승	학	상병	인천	국가보안법7조3	3년
박대승	학	인민노련	평양방문	국가보안법7조3	2년
박대승	학	전 고대총학생회장	교지집필	국가보안법5조	7년
박대승	학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인천	국가보안법7조3	4년
박대승	학	조선대	인천	국가보안법7조3	2년6월
박대승	학	인민노련	인천	국가보안법6조3	1년6월
박대승	학	인민노련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성균관대	김일성애대하여출판	국가보안법7조1, 5	2년
박대승	학	민청련남부지부장	황토현학습관련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일병	마산, 창원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대용	양심선언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광주지역		국가보안법7조3	2년
박대승	학	인민노련	평양방문	국가보안법	5년
박대승	학	전대협평측대표	전 전대협위원장	국가보안법	5년
박대승	학	한양대		국가보안법	4년
박대승	학	창원대	군내의사회	국가보안법	2년6월
박대승	학	수도방위사령부헌병	인천	국가보안법7조3	2년
박대승	학	56사단방위병	인천	국가보안법7조3	1년6월
박대승	학	인민노련	인천	국가보안법7조3	2년
박대승	학	인민노련	인천	국가보안법7조3	1년6월
박대승	학	부산대		국가보안법	2년
박대승	학	강원대		국가보안법	1년6월
박대승	학	화가	결개그림사건	국가보안법7조1, 5	3년

1990년 적용사례

성명	부분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박태호	노	노동계급사건	서울	90. 1. 17	2년
손영모	학	건국대	서울	90. 1. 13	2년
안민규	노	노동계급사건		90. 1.	2년
이용석	학	외국어대용인		90. 1.	
정대희	노		울산	90. 1.	
강보순	학	창원대		90. 2.	
김태종	출	노동문학사	월간노동해방문학제작	90. 2. 12	1년
문광명	학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평측관련	90. 2.	3년
이승용	노	북부노련사건(인천)	서울	90. 2.	
김중섭	노	노동단체실무자	울산	90. 3.	
김근의	재	럭키금성직장예비군대대장		90. 3. 8	
김윤수	노	대림자동차총무부장		90. 3. 16	
문진현	노	노동상담소 '일꾼' 실무자	마산, 창원	90. 3. 4	2년
박기영	노	일꾼상담소	마산, 창원	90. 3. 5	1년6월
박재영	노	노동자대학	인천	90. 3. 17	1년6월
박진현	노	노동자의 집	상남	90. 3.	
성명현	노	봉암단지	부산	90. 3. 3	2년
신언직	노	노동자대학	인천	90. 3. 17	2년
유한태	노	노동자의 집	상남	90. 3.	
이병철	학	계명대	혁노맹사건	90. 3. 18	
이상준	노	노동자대학	인천	90. 3. 17	1년6월
이승필	노	대림자동차	마산, 창원	90. 3.	1년6월
이재구	노	일꾼상담소	마산, 창원	90. 3. 5	2년
이정희	학	계명대	혁노맹사건	90. 3. 24	
임채정	노	경노협간사	마산, 창원	90. 3. 8	2년
정승모	학	과기대	혁노맹사건	90. 3. 7	
정혜숙	학	계명대	혁노맹사건	90. 3. 14	
구자욱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권용수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30	1년
김명호	학	외국어대용인		90. 4.	
김소영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김연인	출	힘출판사		90. 4. 3	1년
김용기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2년
김인선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2년
김중성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1년
김진국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김태진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3년
박윤배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박재혁	재		마창민주청년회	90. 4. 28	
서재석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2년
신남희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3년
신준수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 4. 28	2년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이강석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4.28	2년
하승창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4.28	2년
황순현	노	노동자동맹사건	인천 경기	90.4.28	2년
김근태	재	전민련집행위원장	5.9시위	90.5.13	3년
김수길	출	출판사대표	「 」출판	90.5.9	1년6월
김용미	학	동국대	사노맹사건	90.5.21	
김용숙	노	일선대의원	마산 창원	90.5.10	2년
김현식	노	금성사1공장		90.5.15	
서영완	군·경	전경, 충남대 휴학생	양심선언	90.5.2	1년6월
신효식	학	외국어대	교지관련	90.5.21	1년10월
오규대	노	사노맹사건(일용노동자)	서울	90.5.21	1년6월
유진옥	재	전 코리아명인지 대표		90.5.29	
윤영태	학	경희대수원	대학생불교연합 경기	90.5.17	
이경자	학	충남대졸	학노맹사건	90.5.14	
이은영	학	외국어대	학노맹사건	90.5.14	
김인재	학	단국대		90.6.	
박현주	학	조선대		90.6.8	
변성준	노	삼성조선	거제	90.6.21	
이교우	노	삼성조선위원장	거제	90.6.21	
강응원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사건	90.7.11	
김명식	재	전민련국제협력위원장	4.3항쟁연구관련	90.7.12	1년6월
김봉준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사건	90.7.11	
김은진	학	전주대		90.7.	
김인영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	90.7.11	1년
김형수	노	북부노련사건	서울	90.7.31	
박진범	학	전주대		90.7.12	
백종민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	90.7.11	
유광태	학	부산수산대		90.7.4	
윤남진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사건	90.7.11	
윤후덕	출	세계출판사대표		90.7.11	
이규민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사건	90.7.11	
이민연	출	대동출판사대표	<식민지혁명운동의교훈>출	90.7.	1년
장진성	학	조선대	평축, 이철규전선상규명위원	90.7.	
전세중	출	책사탕		90.7.	
최귀환	학	전주대	전북민주주의학생연합	90.7.12	
황대훈	학			90.7.28	
황의수	학	동국대	반미구국전선사건	90.7.11	
강근욱	군	충남대	학노맹사건	90.8.23	1년6월
권순형	학	성균관대졸	학노맹사건	90.8.23	1년
김기향	학	충남대학원	학노맹사건	90.8.23	
김선환	군인	충남대(단기사병)	학노맹사건7조3	90.8.23	3년
김연희	학	충남대졸	학노맹사건	90.8.23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김영주	학	충남대	학노맹사건	90.8.23	1년6월
김정수	학	청주대	학노맹사건	90.8.2	
김중훈	학	충남대	학노맹사건(민학부련)	90.8.23	2년
김준강	학	한성대	학노맹사건(민학부련)	90.8.23	
김형철	학	고려대	북노련사건	90.8.	
남현우	학	충남대	학노맹사건	90.8.23	1년6월
노성철	재	연대졸	학노맹사건	90.8.23	3년
문지용	학	서울대	학노맹사건	90.8.23	1년
박대호	학	서울대	학노맹사건	90.8.23	3년
박수남	출		노동해방의 철학	90.8.2	
박양근	학	외국어대		90.8.30	
양성호	군	충남대졸	학노맹사건	90.8.23	1년6월
이동구	군	충남대	학노맹사건	90.8.23	1년6월
이병희	학	충남대	학노맹사건	90.8.23	
이한준	군	외국어대	학노맹사건	90.8.23	
정현	학	외국어대	학노맹사건	90.8.23	2년
조재은	군	외국어대	학노맹사건	90.8.23	1년6월
최홍목	학	충남대졸	학노맹사건	90.8.23	
한승권	재	서울대졸	학노맹사건	90.8.23	10월
홍성원	재	국민대	학노맹사건	90.8.23	2년 6월
황이민	학	외국어대	학노맹사건	90.8.23	2년
고영태	노	대림교육부장	마산 창원	90.9.7	
권종길	재	고려대졸업	사노맹 사건	90.9.	2년
김국환	군인		평축전단	90.9.22	1년
김진태	노	삼민동맹사건	서울(노동자신문)	90.9.28	
남원근	학	고려대	책 소지, 집회주도	90.9.13	
손지태	출	노동문학사	노동해방문학관련	90.9.14	
송호철	학			90.9.1	
신승인	노	코렉스스포츠 교육부장	마산 창원	90.9.11	
임해규	노	삼민동맹사건	서울(노운협)	90.9.24	2년
정은희			사노맹사건	90.9.	
차영길	학			90.9.9	
현정덕	재	성대졸업	사노맹사건	90.9.18	8년
권정숙	노	삼주전기	의식화활동	90.10.29	
권중탁	재	경북대 상대 졸업	사노맹사건	90.10.11	2년
김동균	노	지하철노조윤지로입구분회	사노맹사건	90.10.19	
김동진	학	충북대	교지관련	90.10.	
김상현	군인	방위병	교지관련	90.10.	
김석철	재	국민운동본부 관악지부	입수경비디오 제작배포	90.10.25	
김영근	노		민노부맹	90.10.	
김욱현	군	방위	전남대교지관련	90.10.	
김욱현	재	민중당 대구북부지구당	사노맹사건	90.10.9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김진혁	재	서울대졸	자민통사건	90.10.9	
남진현	재	서울대 재직	사노맹사건	90.10	12년
노광호	재	국민운동본부 관악지부	입수경비디오 제작배포	90.10.25	1년
문정선	학	서울여대	자민통사건	90.10.25	집유
박광태	재	가민청 의장	사노맹사건	90.10.11	2년
박성현	학	부산대		90.10	2년
서귀배	재	국민운동본부 동작지부	입수경비디오 제작배포	90.10.25	
서제일	재	동국대	탄미구국전선	90.10	
송갑석	학	전대협	자민통	90.10.26	
유경종	재	민중당 정선지구당	사노맹사건	90.10.11	2년
유인환	재	혁노맹		90.10.29	1년
윤진환	학	성균관대	사노맹사건	90.10.10	2년
이귀영	학	한양대	사노맹사건	90.10.25	
이동기	재	민중당대구북부 지구당	사노맹사건	90.10.19	
이성수	재	민중당 인천남동지구당	사노맹사건	90.10	3년
이성철	재	민중당 마산갑구지구당	사노맹사건	90.10.9	2년6월
이수한	학	외국어대	사노맹사건	90.10	
이우철	학	외국어대	사노맹사건	90.10	
이원혜	출	노동해방문학실	사노맹사건	90.10	
전은제	노		민노투맹	90.10	
전해룡	노	사노맹(선경 천안공장)	충남	90.10.9	1년
정광철			사노맹사건	90.10	1년6월
조정래	학	한양대	사노맹사건 안기부타격	90.10.24	1년6월
차무정	재	민중당 경북영주지구당	사노맹사건	90.10.9	2년6월
최병규	재	성미전자	사노맹사건	90.10.11	2년
최연준	학	경희대	사노맹사건	90.10.24	
최영숙	노		사노맹사건	90.10	
한두석	학	한양대	사노맹사건	90.10.11	2년
황덕창	학	승실대	사노맹사건	90.10	
	출	조치원 양서서점		90.11.28	
고재권	학	청주대	민학편	90.11.28	
곽경훈	재	방위	자민통	90.11.9	
김기수	학	경희대	자민통	90.11.6	
김동규	학	외국어대	자민통	90.11.10	
김명길	학	새진		90.11	
김명진	학	전남대	자민통	90.11.6	
김명철	학	민노투맹	서울	90.11.21	
김상범	학	외국어대	자민통	90.11	
김상욱	학	영남대	시위	90.11	
김연기	학	민노투맹	서울	90.11	
김요섭	학	한림대	자민통	90.11.13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김운균	학	청주대	민학투련	90.11	
김운호	학	신구전문대	민학련	90.11.14	
김재응	학	한양대		90.11.5	
김정훈	학	서울대		90.11.21	
김준연	학	강원대	민학련	90.11	
김지형	학	경기대 대학원	자민통사건	90.11.11	
김진철	노	민노투맹	서울	90.11.21	
김진형	학	전주우석대	시위	90.11.23	
김형욱	학	제주대	북한영화상영	90.11.26	
김홍조	출	한출판사	이적서적발행	90.11.5	
문진안	출	일꾼상당소		90.11.24	
박종오	학	중앙대	자민통	90.11.3	
박종화	학	전남대	북한노래테이프제작	90.11.21	
박지영	학	일꾼상당소		90.11.24	
박희광	학	외국어대	자민통	90.11	
서형욱	노	경동산업해고자	인노회관련	90.11.10	
설상영	노	민노투맹	서울	90.11.21	
성삼영	학	청주대	민학투련	90.11	
소종민	출	노동문학사	사노맹사건	90.11.8	
손서락	군	서울대졸	자민통	90.11	
손중국	학	전남대	자민통	90.11	
송명재	노	민노투맹	서울	90.11.21	
송소연	재	광주새날청년회	자민통사건	90.11.3	
신배섭	재	사노맹	90.11		
안형주	학	부산공업대	사노맹관련	90.11.15	
이건범	학	민노투맹	서울	90.11.21	
이근중	학	민노투맹	서울	90.11.21	
이연희	학	중앙대	자민통	90.11	
이재남	교	신안인뢰남국교교사	자민통	90.11.3	
이해학	재	목사	법민련결성	90.11.30	
임성운	재	강원대	민학련	90.11	
장민성	출	노동문학사	사노맹사건	90.11	
전상현	학	중앙대	자민통	90.11.10	
전성득	학	인천대	자민통	90.11.24	
정해준	학	외국어대	자민통	90.11	
조성우	재	전민련 조통위원장	법민련결성	90.11.30	
조용술	재	목사	법민련결성	90.11.30	
최기호	재	부산공업대	사노맹관련	90.11.15	
최성문	학	민노투맹(민학투맹)	서울	90.11.21	
최원극	학	외국어대	자민통	90.11.10	
최은정	학	서울여대	자민통	90.11.10	
최중운	군	감신대	민학련	90.11.26	
최정숙	재	경희대 졸업	자민통사건	90.11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황관중	재학	청년운동가	서적소지	90. 11	
황범일	재학	경북대	북한영화상영	90. 11	
황정일	재학	승실대	사노맹	90. 11. 29	
김진식	재학	고려대	북한영화상영	90. 12. 7	
김경환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7	
김관형	군	동국대	민학련	90. 12. 8	
김광석	재학	서원대	교내대자보관련	90. 12. 3	
김민승	노학	기술센터	'새길발'가입학습	90. 12. 22	
김수경	노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김영진	군	신구전문대	민학련	90. 12. 12	
김입경	군	청주대	민학련	90. 12	
김준호	군	동국대	민학련	90. 12. 8	
박경희	출재	지양시대표	정치사전발행	90. 12. 17	
박동철	재학	거제민주당	시위	90. 12	
박세환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박정규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7	
신용관	재학	단국대전안	북한영화상영	90. 12	
유병홍	노학	미청노련실무자		90. 12	
이용철	재학	청주대	민학련	90. 12	
이종화	재학	경남대		90. 12. 24	
주명하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표홍섭	재학	청주대	민학련	90. 12	
한중서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7	
홍사국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홍종욱	재학	동국대	민학련	90. 12	

1991년 적용사례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김병하	재학	경북대	시위	91. 1. 6	
김종욱	노	일꾼상담소		91. 1. 4	
김희택	재학	전민련사무처장	범민련관련	91. 1. 25	
나영중	재학	서울대	학습모임	91. 1.	
서동우	재학	민중당울산·동구	사노맹관련(이적표)	91. 1. 19	
서정훈	재학	경북대	시위	91. 1. 9	
손행심	재학	전남대	김주석신년사교도소반입	91. 1. 14	
이근성	재학	경북대	시위	91. 1.	
이종길	재학	민중당울산동구	사노맹관련(이적표)	91. 1. 21	
이진용	재학	대전대	북한영화상영	91. 1. 25	
이창복	재학	전민련공동위원장	범민련관련	91. 1. 25	
임용순	재학	단국대전안		91. 1. 30	
정은희	재학	대전대	북한영화상영	91. 1. 25	
조성국	재학	조선대	교지관련	91. 1.	
강영희	재학	한양대	사노맹	91. 2. 23	
권삼현	재학	경남대	사노맹	91. 2.	
김양호	재학	동아대		91. 2. 2	
김영재	재학	경남대	사노맹	91. 2.	
김유동	재학	연세대	북한영화상영	91. 2. 14	
김천용	재학	부산경성대		91. 2.	
남상석	재학	국민대	시위	91. 2. 4	
문정우	노	대화염공		91. 2.	
양봉만	노	동국대	사노맹	91. 2.	
엄천용	노	한일조음파사무장		91. 2.	
이귀혜	재학	이화여대	입수경평측파전	91. 2. 9	
전문환	재학	서강대	입수경평측파전	91. 2. 9	
최규명	재학	동아대		91. 2. 2	
최진락	재학	경북대	평측관련	91. 2.	
홍근수	재학	목사	범민련관련	91. 2. 20	
권대현	재학	동아대	애국군인	91. 3. 21	
김동현	재학	부산외국어대		91. 3. 14	
김용석			사노맹사건	91. 3.	
김용세	출	한기확대표	애국군인	91. 3. 21	
김원주	출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 3.	
김은철	재학	한양대	애국군인	91. 3. 21	
김익진	재학	부산대	부민학련	91. 3. 5	
김진주	재학		사노맹사건	91. 3.	
김진훈	노	경기노련쟁외부장	경수노련	91. 3.	
김태연	노	퍼시픽정밀	경수노련	91. 3. 12	
김학범	재학	서강대	조통그룹	91. 3.	
맹성호	출	노동해방문학실	사노맹사건	91. 3.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박관우	출	노동해방문학실	사노맹사건	91.3.	
박기평	재	시인·노동운동가	사노맹사건	91.3.	
박득준	학	연세대	조통그룹	91.3.	
박미경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	
박배업	출	새날서점		91.3.26	
배문정	학	동아대	애국군인	91.3.21	
배병창	군	서울대, 방위병		91.3.28	
서재호	학	동아대	애국군인	91.3.21	
안주용	학	고려대	'우금치'학습팀	91.3.	
오진희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	
유진희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	
윤광훈	학	경성대		91.3.21	
이명자			사노맹사건	91.3.	
이성강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	
이영자	노		사노맹사건	91.3.	
이용석	노	수원지구교육차장	경수노련	91.3.	
이중섭			사노맹사건	91.3.	
임진숙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20	
장기영	노	수원노동상담소간사	경수노련	91.3.12	
전현선	출	노동해방문학실	사노맹사건	91.3.	
정기호	학	동아대	애국군인	91.3.21	
정선희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18	
정주영			사노맹사건	91.3.	
조정현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	
최미전	학	상명여대	조통그룹	91.3.23	
최민철	군	화가, 방위	서울민미련사건	91.3.	
최성철			사노맹사건	91.3.	
최애경	예	화가	서울민미련사건	91.3.	
최익균	예	미술평론가	서울민미련사건	91.3.18	
표광소	출	노동해방문학실	사노맹사건	91.3.	
홍순철	학	연세대	조통그룹	91.3.	

기타 미확인사례

성명	부문	직업	사건명	일자	선고
강근욱	출	조치원 양서서점		90.11.28	
강기석	군	충남대	혁노맹사건	90.8.23	1년6월
강기원	노	평화방송		91.1.24	
고명종	학	전국대총주		91.1.24	
김광호	학	서원대	집회시위주도		3년
김기현	학	부산경성대			3년
김상명	군인		구로아리랑사전관련		6년
김상철	노	현대정공			
김용근	군·경	공군전투비행단	양심선언	88.11.18	2년
김종실	군인				
김태관	학	전주교대			
남평오	노	풍산금속	이념서적제작배포		
노성진	출	일과놀이출판사			1년
문영규	출	작가			1년6월
박영배	학	서강대			
박계현	노	우영산업	울산		
박형민	군	강원대			
심권택	학	외국어대	사노맹사건		
양준홍	학	전주우석대			
유학식	학	외국어대	학내시위동		2년6월
이문숙	학	전주우석대			
이상훈	학	청주대	민학투련관련		
이원혜	군인	31사단단기사병			
이혁찬	출	노동해방문학실	사노맹관련		
임준	학	외국어대	사노맹사건		
정세연	학	외국어대	사노맹사건		
정주용	군인	56사단단기사병		88.10.24	2년6월
최원창	학	서강대	사노맹		
한종만	노	풍산금속			2년
	학	충북대	교지관련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및 그 개폐방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 사례

(1) 90. 3월 마창 대림자동차 노조 위원장(이승필), 홍보부장(김윤수)이 서울에서 도서관을 운영했다고 하여 이적표현물 소지, 대출 혐의로 구속됨, 이적 표현물이라고 해서 나온 책들은「태백산맥」 「남부군」 「무기의 그늘」 등 시판되는 출판물로서 이는 노조 핵심간부를 분리·제거하기 위한 명백한 노조탄압이었음.

(2) 90. 2월 태평양화학노조 서울지부장 윤명선씨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의 자본가 논리를 비판한 글(「노동해방문학」 박노해)을 복사·배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울산 현대정공노조 홍보부장 김상명씨는 조선대학교 교지에 발표된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과 현정권을 비판한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글을 노보에 옮겨 실은 이유로 각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되었다.

(3) 인천의 명성전자 노조 위원장(김기자) 등 노조간부 3명도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서적(시중 판매서적임)을 빌미로 90. 1월 구속되었다가 3월 집행유예로 석방됨.

(4) 부천의 한일초음파노조 사무장(엄천용)은 91. 2월 술자리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할 수 만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됨.

(5) 이밖에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천부천 노동사회>,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 <경수노련> 등 술한 조직사건들이 발생, 예외없이 국보법을 적용하며 노동운동가들을 대량 구속함.

2. 전노협의 입장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보법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반노동자적 악법이며 국보법철폐 없이 노동운동의 자유는 결코 확보될 수 없다. 89년 이후 국보법 적용으로 인한 노동자 구속자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보법은 노동운동·민중운동 탄압 뿐 아니라 민중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또한 국보법은 동서 냉전구조의 완화와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진전이라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악법이다.

현정권과 지배세력은 국보법폐지가 반국가단체의 체제전복기도에 의한 사회혼란을 가져온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바 이것이 결코 국보법 존속의 구차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중운동탄압의 대표적 악법이며 분단과 독재유지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개폐에 대한 견해

전국민민연합

가히 살인적인 민중탄압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들은 헌법이 제시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신장하고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보안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정권의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장치로서의 국보법은 정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사적으로 반민 중적, 반민주적, 반통일적인 내용 및 시행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의 분단상황을 빚어낸 남한 단독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이승만은 반공을 빙자하여 어떠한 반정부적 활동도 국보법에 의해 처벌하였고, 4·19 이후 잠시 폐지되었다가 민중운동의 성장에 새로운 국보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면서 반공법을 제정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등을 포괄적으로 처벌'하도록 탄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계획된 탄압의 도구로서 국보법(혹은 반공법)은 국가보안을 내걸고 사상·정치범을 다스리는데 심분 이용되었다.

이렇듯 민중운동의 성장은 정권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고 반민주적인 탄압장치를 마련하게 만든다. 민중의 이익이나 민족의 통일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현정권이 이미 역사적으로 파탄된 국보법을 계속 유지하려고 의도는 자명하다. 정권의 유지와 민중탄압에 의한 장기집권, 지배권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보법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이른바 개혁입법의 문제도 정당들의 광역의회선거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반민주 악법이 대량으로 무사통과될 것이다.

때문에 국보법은 다소의 수정작업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골격까지 정권측에서 개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탄압하고 사상·언론의 자유는 이미 사문화된 문구에 불과한 실정에서 민중들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 대열과 힘만이 우리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의 개정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전빈연은 이것으로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의 통치술이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민중의 진출에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이는 민중의 기본권 쟁취투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투쟁대열에 나서고자 한다.

6공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전교조 조합원 또는 전교조 관련자로서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피해를 본 사례는 별표와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교육민주화운동이나 전교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또는 구속당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에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현직교사, 의식화교육 등 국보법위반 혐의로 학교현장에서 불법연행되어 구속.

1. 경남 밀양 홍제중학교(동국학원재단, 동국대학교와 같은 재단, 학교도 표창사 입구에 있음) 구 현 교사(국어, 33세)가 의식화교육활동 등의 혐의로 학교현장에서 강제연행된 후 구속.

2. 구속경위: 1991년 4월 8일 새벽 6시 30분경 사복경찰 3명이 구속영장도 없이, 숙직중인 구 현교사를 학교에서 강제연행하고 하숙집을 수색하여 밀양경찰서로 연행 후, 4월 9일자로 밀양지원 환태진판사 명의로 구속영장 발부받아 유치장 구속시킴.

3. 구속배경: 구 현교사는 그동안 줄곧 홍제중학교에서 교사의 신분과 학교운영의 민주적인 관행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로서 활동해 왔다. 잡부금 강제징수로 교단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재단측에 육성회예산공개를 요구하여 잡부금비리 척결에 앞장서 왔고, 담임배정이나 사무분장에 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학교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교사의 집약된 의견을 대변해 왔다.

구교사의 이러한 활동은 재단에 눈에 가시처럼 인식되어 평소 교장·교감과 의견대립이

심한 편이었으며, 주위 교사들은 구 현교사의 주장에 언제나 무언의 지지를 보내왔다. 경남 지부가 밀양경찰서로 확인한 결과 학교측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4. 혐의내용: 1) 학교에서 도서담당으로 있을 때 구입한 책 중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2) 6·25 복침설에 관한 언급—89년 5월 당시 전교조를 의식화집단으로 매도할 때 여론화되어 한참 시끄럽던 6·25부분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것을 언급했을 뿐—
5. 동료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대응: 1) 전교직원과(사무직원 포함)학생들이 탄원서명을 제출
2) 학부모들도 탄원서명을 추진 중
3) 동료교사들은 구교사석방을 요구하는 것달기, 19:00까지 퇴근안하기 운동등을 벌임
4) 전교조 밀양지회는 사건내용을 폭로하는 보도자료 배포 및 유인물 배포
6. 4.20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별표〉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해를 본 사례

연번	성명	학교	구속일	관할경찰 담당검사	공판과정 및 결과	비고
1	조태훈	서울 인덕공고	890502	서울지검 이중왕	징역1년 집유2년 자격정지1년	금보석 100만 국보법
2	이수찬	영주 봉산여중	890526	안동지검	징역8월 집유2년 항소: 무죄	국보법
3	강성호	충북 제원고	890502	제천 경찰서	징역1년 집유2년 항소석방	국보법 900607 상고기
4	김맹규	서울 목동중	8908	남주지청	징역1년 집유2년 891205석방	국보법 이적 표현물
5	마혜식	전교조 총무부	8908	서울지검		국보법 자주학 교관계
6	이상현	광주남자 사제지오고	890810	서울지검 이문호	징역1년 집유2년 자격정지2년 891116석방	국보법 복괴찬 양이적 표현물
7	유상덕	서울 성동고		서울지검		국보법 이적표현 수배중
8	박인구	서울 우신고교	891104	서울지검	징역8월 집유 900125석방	국보법 이적표 현물
9	최훈	전교조 간사	891104	서울지검	보석 900106석방	국보법 이적표 현물
10	이일권	서울 당산중	891209		징역1년6월 집유3년 900308석방	국보법
11	정미화	대구 대덕국	901010			사노맹 관련
12	구현	경남 홍계중				국보법

국가보안법 개폐방향 및 그 적용사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얼을 억압하는 법이다.

민족의 얼은 진정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로, 글로, 그림으로, 연극으로, 음악으로, 영화로, 표현하고, 그 표현된 것이 자유롭게 유통되어 많은 국민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표현된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법이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선열들이 피를 뿌리며 가꾸어 온 우리의 민족공동체는 현대에 들어서 강대국들이 강요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와해될 수는 없다. 우리가 민족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없다. 이는 최근 몇 가지의 실낱같은 남북의 만남의 계기등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 성원 간에 적대감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반민족적인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인륜과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며, 더구나 인간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과 친지간에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인륜적이며 반문명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가족과 친지들끼리도 고발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가두는 법이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극히 애매한 법조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신성한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다.

수많은 민족예술인들이 벌써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난을 당해

왔다. 우리는 이 법이 우리 민족의 정상적인 성장과 민족예술의 발전을 가로막음으로서, 민족의 얼을 가꾸는 일을 방해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침해하며, 이땅을 반인륜, 반인권이 지배하는 운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하는 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아니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소속단체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전국민족민중운동연합〉

성명	직업	일자	연행, 구속사유	석방일자	비고
홍성담	화가	89. 7. 31	민족해방운동사 「결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징역3년
차일환	화가	89. 7. 31	민족해방운동사 「결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89. 12. 22	집행유예
정희수	화가	89. 8. 5	민족해방운동사 「결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89. 12. 29	집행유예
백은임	화가	89. 8. 5		89. 11. 15	집행유예

〈민족미술협의회〉

성명	직업	일자	연행, 구속사유	석방일자	비고
김용태	화가	89. 3. 1	범민족대회	89. 3. 3	불구속입건
신학철	화가	89. 8. 17	작품 「모내기」 (국가보안법 위반)	90. 2. 16	급보석
이종불	화가	89. 11. 2	노동운동사 「문건소지」 (국가보안법 위반)	90. 2. 16	집행유예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성명	직업	일자	연행, 구속사유	석방일자	비고
최열	미술평론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정선희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오진희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임진숙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이성강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김원주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유진희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박미경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조정현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최애경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수감중	

최민철	화가	91. 3. 19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	----	-----------	--------------------------	-----

*수배자 : 서미련 회원 박영균 백만우 이진우 외 7명.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

〈민족문화작가회의〉

성명	직업	일자	연행, 구속사유	석방일자	비고
고규태	시인	91. 2. 17	북한원전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	89. 5. 23	집행유예
강태형	시인	91. 3. 27	북한원전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	89. 6. 29	집행유예
신경림	시인	91. 3. 27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89. 3. 29	불구속입건
현기영	소설가	89. 3. 27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89. 3. 29	불구속입건
김진영	시인	89. 3. 27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89. 3. 29	불구속입건
고 은	시인	89. 3. 27 89. 4. 1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89. 3. 29 89. 6. 2	불구속입건 금보석
백낙청	문학평론가	89. 3. 27 89. 4. 12	남북작가회담과 관련 남북작가회담과 관련	89. 3. 29 89. 4. 14	불구속입건 불구속입건
김규동	시인	89. 3. 1	범민족대회	89. 3. 3	불구속입건
황석영	소설가	89. 4	북한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중지
문익환	시인	89. 4. 13	북한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병보석
김사인	시인	89. 5. 26 90. 1. 15	노동해방문학과 관련 노동해방문학과 관련	89. 9. 18	집행유예 수배중
임규찬	문학평론가	89. 5. 26 90. 1. 15	노동해방문학과 관련 노동해방문학과 관련	89. 9. 18	집행유예 집행유예
도종환	시인	89. 6. 26	전교조와 관련	89. 8. 28	집행유예
윤재걸	시인	89. 7. 3	서의원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중지
이기형	시인	89. 7. 11	시집 「지리산」 출판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89. 11. 24 불구속 재판	집행유예
이승철	시인	89. 7. 6	북한원전출판 (국가보안법 위반)	89. 10. 20	집행유예
백진기	문학평론가	89. 7. 10	이철규소제 초고집필중 (국가보안법 위반)	89. 11. 3	집행유예
임형진	문학평론가	89. 7. 10	이철규소제 초고집필중 (국가보안법 위반)	89. 11. 3	집행유예
이시영	시인	89. 11. 13	황석영「북한방문기」창비계재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90. 1. 3	집행유예
김이구	소설가	90. 12. 4	황석영「북한방문기」창비계재관련	89. 12. 6	불구속입건

송기원	시인	90. 2. 22	시집「붉은산점은피」출판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89. 8	6개월 복역
-----	----	-----------	------------------------------	-------	--------

성명	직업	일자	연행, 구속사유	석방일자	비고
오봉옥	시인	90. 2. 22	시집「붉은산점은피」출판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90. 5. 30	집행유예
김명식	시인	90. 7. 11	시집「제국의굴레」출판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손지대	문학평론가		노동해방문학과 관련		수감중
박노해	시인	91. 3. 10	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중

* 백무산(시인), 임홍배(문학평론가), 조정청(문학평론가) 사노맹 관련 수배중.

〈민족영화위원회〉

* 청년 제작소가 만든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영화공간 1895년에서 상영중 필름 5벌 압수, 사건 조사진행중(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국가보안법과 출판·사상의 자유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출판활동을 하기 힘든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9월20일 현재까지 39명의 출판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출판·사상의 자유는 출판인을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과 맨몸으로 부딪쳐 출판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시켜 쟁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시내 서점에 가보면 온갖 종류의 이념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6공화국 출판탄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과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 등)에 의한 출판인의 연행·구속과 출판사·서점에서의 출판물 압수·수색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1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공화국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한 출판인의 구속은 늘어나기만 했다. 제5공화국 7년 동안에 출판인 구속자의 수가 33명이었는데 반해 제6공화국 2년6개월 동안의 구속자의 수가 86명에 이른다. 이처럼 노태우정권은 전두환정권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86년에서 87년, 89년 그리고 90년 현재까지 3차례의 대탄압이 자행되었는데, 이는 민족민주 출판문화운동의 발전과정과 일치한다. 즉, 86년에서 87년의 시기에는 정통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서적내지는 맑스레닌원전 출간이, 89년에는 북한 원전의 출간이, 그리고 90년에는 국내 연구자들의 저술 출간이 이루어졌고, 이는 매시기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연행자 중 구속자의 비율이 매년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공안당국의 탄압이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와 아울러 검찰·법원에서의 법 적용과정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특히 89년의 경우 구속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곧, 연행=구속=기소=유죄판결=집행유예의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보안법의 획일적 집행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현재 공안·법률 기관들의 도서 평가능력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모든 구속 출판인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된 책의 몇몇 구절을 이전인수격으로 짜집기하여 출판물의 이적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책의 전체 내용전개는 별개로 한 채 특정 문장만 검찰이나 법원의 입맛대로 재구성하고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제5공화국 시절 모 판사의 판결문은 점사의 공소장의 오자·탈지까지 그대로 베껴놓아 반축을 산 일이 있다.

이처럼 이념도서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소양은 커녕 이해능력조차 부재한 공안 담당 판·검사들에 의한 법집행이 국가보안법을 더욱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법률적으로는 '평화통일정책'을 밝힌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7·7선언과 89년9월 발표된 정부당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도 모순된다. 평화통일 추구는 남북한이 '대등한 법적지위'에 서지 않을 경우 전혀 현실적인 토대를 갖지 못하므로 북한을 범죄단체인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한 관계에 대한 현행 법체계는 서로 모순되는 이원적 구조로 돼있는 것이다.

형사법 체계에서 상호 모순되는 법을 근거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이 주장되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이 존재하는 한 지켜져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국가보안법 각 조항의 불명확성 및 자의적 해석가능성과 맞물려 어이없는 법 적용사태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동안 국내외의 비웃음을 사왔다.

지난 4월2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90%이상이 이 조항 위반일 정도로 핵심적인 조항인데, 특히 제5항은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89년 공안정국을 계기로 본격화된 출판인에 대한 대량구속시대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루

어졌으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애초에 출판탄압을 위해 검찰권이 악용되었던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초이다. 어떤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주요 원칙이다. 이들 자유에 대한 구속이나 제한은 비민주적 강압에 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합리한 왜곡을 통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구체적 형태가 학문과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경제개발, 정치안정, 과학·기술진보, 문화창달 등 인간생활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모든 가치는 개방적이고도 엄밀한 학문적 탐구와 탐구결과의 제한없는 사회적 공유없이 성취할 수 없다. 체계적 사상을 형성하고 보다 발전된 이론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연구자는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학문적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출판계는 어떠한 경제·정치적 세력의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민족민주적 출판문화운동은 한국사회의 사상·문화적 토양에 거대한 변모를 가져왔다. 90년대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출판문화운동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사상·출판의 자유가 시급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소련·중국·북한 등 사회주의권과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맑스레닌주의 저작과 북한원전을 급서로 묶어놓는 시대착오적인 출판정책이야말로, 민족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배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문화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조장되면서도, 자주·민주·통일운동 세력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극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90년대 한국사회의 완전한 사상·출판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폐지가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정 또는 대체입법의 시도는 즉시 중지되어, 시대 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출판활동의 규제와 불이익을 원상회복시키고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중인 출판인의 석방, 수배중인 출판인의 수배해제, 압수당한 도서의 반환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묶여있는 도서에 대하여, 정치적인 해금을 단행해야

한다. 출판에 대한 탄압이 단지 출판탄압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법 개악을 통한 방송 장악기도, 국군조직법 개악, 내각제 개헌기도 등과 같은 민지당일당 독재의 장기집권 실현을 위한 전체 변혁운동에 대한 정략적 탄압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판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출판인들이 과학적 이론과 사상을 전파해야 할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완전한 출판, 사상의 자유쟁취를 위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 탄압사례

진보적 이론과 민중 실천과 결부된 출판운동은 80년 광주학살 이후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변혁을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게 된 민중의 요구가 기초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판운동에 대한 탄압은 시기별로 보면 80년대 이전과 81년~85년(이른바 유화적 시기), 85년~87년, 그리고 현재로 구분된다. 81년~85년까지는 주로 제3세계와 서구 좌파 지식인의 저자에 대한 탄압이 판금, 판매 중지 종용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85~87년 시기에는 마르크스-레닌 원전 등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었다.

87년 이후 시기에는 북한바로알기운동으로 비롯된 북한관련 출판물과 6월국민항쟁, 7.8월 노동자투쟁 등으로 본격 개시된 민중투쟁과 관련된 책자, 국내 연구 성과에 대한 탄압 등으로 이어져 왔다.

80년대부터의 출판인 구속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8	계
구속자	2	4	0	0	0	1	12	22	10	43	35	129
연행자						14	68	85	31	78	22	298

위의 간단한 표로도 알 수 있듯이 출판인과 출판운동에 대한 탄압은 민중운동의 성장과, 그에 대한 정권의 탄압 정도와 비례하고 있다. 또한 연행자 중에서 구속 처리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특히 민중의 조직적, 의식적 성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온 6공화국 아래서 출판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새롭고 진보적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중 내 세력과 이를 압살하고 낚고 허물어져가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과의 사상적 내전 상태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한편의 책을 손에 들기까지 소위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에 의해 입체적인 저지, 탄압이 행해지는데 출판악법에 의한 1차적 저지선이 쳐진 위에 자본이 영세한 출판사들의 사정을 노려 납본기일을 빌미로 사법심사를 의뢰 '건수'만 있으면 곧장 구속 연행으로 이어지고 광고기회를 봉쇄하기까지 한다. 간신히 서점에 배포된 책들도 언제 어떤 빌미로 압수, 수색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1> 정권 교체기의 압수, 수색

- 87년 7월 월간조선의 조갑제기자가 정리한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는 정승화씨의 회고록을 인쇄용 필름 상태에서 압수.
- 87년 11월 「제5공화국 정치비사」— 중원문화에서 교정지 상태로 압수.
- 87년 11월 「제5공화국, 그 군부인맥」 2,400부 압수.

<사례 2> 북한관계 서적에 대한 상식 이하의 탄압

일일이 사례를 들기 힘들 정도로 많으나 황석영씨의 예를 보자.

· 안기부는 89년 11월 창작과 비평사 주간 이시영씨를 국보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시켰다. 안기부에 따르면 「창작과 비평」 89년 겨울호에 황석영씨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의 일부를 게재한 것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가, 이 원고의 게재와 관련한 전화연락 및 원고료 지급 등의 행위는 각각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었네」의 일부 원고는 이미 「신동아」 89년 6월, 7월호에 실렸던 것이다.

<사례 3> 안기부, 보안사 등의 보복 수사

- 88년 보안사의 요원들은 100여개의 서점에 영장없이 들이닥쳐 도서출판 소나무의 「보안사」라는 서적을 몽땅 압수해갔는 바 이 책은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보안사에 끌려가 간첩으로 조작되는 과정, 보안사 내부 요원이 되어 보고 들은 보안사의 악폐를 수기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 89년 안기부는 도서출판 힘의 대표 김연인씨를 영장없이 연행, 수사과정에서 안기부는 동 출판사의 도서인 「의혹의 KAL기 폭파사건」을 문제삼아 집중수사했는데 “그책의 원고를 건네준 간첩이름을 대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협박으로 일관하였다. 이 수사 이후 대표를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계속 팔려나가자 안기부는 보복적 조치로 편집부 직원, 경리까지 연행, 구속한 바 있다.
- 출판탄압의 특징 중 노동자의 사상을 전파하는 책, 「노동자의 삶으로 배우는 자본론」 「노동해방의 철학」 「박노해 현상」 「노동자의 경제학」등에 대한 탄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행인 또는 대표의 구속 뿐만 아니라 필자에 대한 구속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및 그 개폐방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 전동균 (35, 구로구 소재 푸른치과)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산업보건분과장 및 사업국 간사 역임. “노동과 건강 연구회”에서 학술, 연구 실천 활동을 벌여 왔으며 노동자의 건강살을 위해 활동하는 “푸른치과”에서 진료및 활동을 해옴.

— 지난 3월 25일,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이며 사노맹 중앙위원인 박노해(본명 박기평)씨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구속됨.

— 구속된 전동균 원장과 박노해씨는 전원장이 서울치대에 재학중이던 79년, 야학에서 알게된 뒤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로 박노해씨가 병고와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가슴 아파해왔다고 함, 그러던 중 박노해씨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전원장은 그 자신도 반지하에 두칸 전세를 살면서도 어렵게 돈을 마련해 줌.

— 평소 그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의 활동에서나 사적인 토론의 자리에서 사노맹의 조직 및 활동 노선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점이나 주위 소수의 절친한 동료들에게, 사노맹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사노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처지도 아니라고 거절했다고 한 심정으로 보아 그가 사노맹의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됨.

2. 김옥희 (35, 가리봉치과)

— 구로구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획실장으로 활동.

— 구속된 전동균원장과는 서울치대 76학번 동기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임. 전원장의 부탁으로 박노해씨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이유로 4월 17일 구속됨.

— 평소 김원장은 이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나 사노맹의 조직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 전원장이 그런 비판적 내용을

박노해씨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권유했을 때도 지금과 같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원장이 입금하는 돈이 박노해씨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았느냐의 인지 여부만으로 현직 치과 원장이며 안정적 신분의 치과의사를 구속수사하는 과잉 법 집행을 일삼고 있음.

□ 우리의 제언

우리는 박 노해씨에게 활동자금과 편의제공을 하고 불은 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전 동균원장과 김 옥회원장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마땅히 철폐되어야함을 밝히는 바이다.

세계 제1의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참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전 동균원장의 행적과 현재 구로구 치과의사회 공보이사이며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온 김 옥회원장의 열의를 볼 때, 국가보안법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마저 유린하고 죄악시하며 무차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더우기 탈냉전이 시대적 조류라 주장하며 그동안 적국중의 적국이라고 국민들에게 교육시켜 왔던 소련의 최고 책임자와 웃으며 악수하고있는 노태우대통령의 제주도 사진과 국가 고위직에 몸담은 사람들이 김 일성주석과 웃으며 악수하고 찍은 평양 사진을 보는 우리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역대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에 대한 요구나 민중의 생존권투쟁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족쇄를 채워왔다. 그러나 87, 88년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조건의 변화와 국민의 민주적 권리의 당연한 요구로서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제반 악법의 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국민적 합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제반 악법에 대한 개폐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커녕, 공안정국 이후 급증하는 구속자중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자의 수가 총구속자의 절반을 넘는다는 현실은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화를 표방하고 나선 6·29선언 자체가 최대의 자기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무시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엮매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반민주악법의 철폐를 다시한번 주장하는 바이다.